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204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우리

2.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방연지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1. 6. 접수 제1719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B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유한회사 B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1. 8. 접수 제1735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4. ~ 2017. 3. 3.(이후 2020. 2. 27.로 변경)'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3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4.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4. 19. ~ 2018. 4. 18.(이후 2020. 4. 17.로 변경)'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3)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전구상)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생략)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생략)

제10조(상환범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생략)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2020. 1. 8.경부터 D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 5. 8. D에 300,740,982원(원금 297,000,000원, 이자 3,740,9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20. 1. 1.경부터 E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 5. 19. E에 274,454,852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4,454,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회사는 2019. 11. 6.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2019. 1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9. 11. 8. 피고 유한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019.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9. 1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9.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1) E은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G)하였고, 2020. 5.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2)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6.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1. 6. 피고 주식회사 A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71984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9. 9. 10. 피고 유한회사 B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8. 피고 유한회사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7359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유한회사 B를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러하기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채권자가 그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취소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식회사 A, 유한회사 B가 소외 회사 또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장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김보현, 판사 전지은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장용지 3934㎡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위 지상
☐ 동
철골조 경사지붕
(티에이치케이75센드위치판넬)
공장
1층 334.43㎡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
위 지상
☐ 동
철골조 경사지붕
(티에이치케이75센드위치판넬)
창고
1층 170.10㎡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
위 지상
☐ 동
철골조 경사지붕
(티에이치케이75센드위치판넬)
사무실
1층 69.30㎡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
위 지상
☐ 동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티에이치케이75센드위치판넬)
창고
1층 211.05㎡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 166㎡

